

한국 복지체제의 역진적 선별성: 사적 소득보장기제를 중심으로*

윤홍식** · 이충권***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복지체제의 역진적 선별성이 공적 복지에 국한되지 않고 사적 영역에서도 존재하며, 이러한 역진적 선별성이 강화되고 있는지 실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3년 동안의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적 소득이전은 소득불평등을 더욱 확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사적이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가 커지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득계층 간의 격차도 더 커졌다. 가족 간 소득이전에서도 소득계층 간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났다. 민간보험의 경우 중·상층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자산소득에서는 고소득 계층의 쏠림 현상이 더욱 극명하게 나타났다. 또한, 고용주와 자영업자는 사적 소득이전에 더 의존하고 있는 반면 임금 노동자의 경우 사적이전소득에 큰 변동이 없이 유지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반화최소자승법(GLS)을 활용한 다원분석 결과, 시장소득과 연령이 높을수록 전체 사적이전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공적 사회보장제도가 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층적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확대는 노후소득의 불평등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공적 소득보장제도를 강화하여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여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사적 소득보장제도의 강화는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강화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어: 역진적 선별성, 사적 소득, 소득계층, 고용지위

* 이 논문은 2020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공동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20S1A5A2A03046855)

** 주저자,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hsyoon@inha.ac.kr)

*** 교신저자,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ckl1@inha.ac.kr)

1. 문제제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복지라고 하면 소득보장정책과 사회서비스를 떠올린다. 우리만이 그런 것이 아니다. 영국을 비롯한 서구에서도 이런 현상은 일반적이다(Powell 2011(2007): 21). 대다수 영국인도 복지라고 하면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를 떠올린다고 한다. 하지만, 개인이 직면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기제가 공적 복지뿐만 아니라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실제로 OECD(2019: 5)가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네덜란드, 스위스의 GDP 대비 사적 지출은¹⁾ 2015년 기준으로 무려 12~13%에 달하며, 호주, 아이슬란드, 영국에서는 대략 GDP의 6%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경우 사적 지출을 사회지출에 포함하면, 미국의 사회지출은 2015년 기준으로 GDP 대비 18.8%에서 무려 30.8~31.8%로 높아진다. 미국이 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가 되는 것이다(OECD 2022; OECD 2019).

현실이 이와 같은데도 복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사적 지출의 역할을 간과하곤 한다. 더욱이 한국에서는 OECD가 사적 지출로 분류조차 하지 않는 개인 간 소득이전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0여 년 전의 자료이지만, 2010년 기준으로 “가족, 친지 간 사적 이전” 규모는 GDP의 대략 2.8%인 것으로 추정되었다(김진욱 2013). 여기에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돌봄까지 포함하면 GDP 대비 사적 이전 규모는 최대 9.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016년을 기준으로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개인 간 소득이전)을 비교한 분석을 보면 가구 당 사적이전소득은 월평균 189,391원으로 공적 이전소득 234,737원의 80.7%에 달했다(손병돈 2021: 103).

하지만 사적 이전과 사적 지출이라는 개념만으로는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광범위한 기제를 모두 포괄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개인(가족)이 보유한 ‘자산’은 개인과 가족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역할을 오랫동안 담당해왔다. 더 나아가 우리는 리사 앳킨스(Lisa Adkins)와 동료들이 『이 모든 것은 자산에서 시작되었다』에서 주장한 것처럼 자산이 우리의 삶에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에 들어서고 있는지도 모른다(Adkins, Cooper, and Konings 2021[2020]: 8). 다시 말해, 우리는 노동의 상품화가 우리의 삶에 핵심적 역할을 했던 시대에서 자산이 노동의 상품화를 대신하는 “자산 경제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서구 학자들에게 사적 자산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현상은 낯선 풍경이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현실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한국 복지체제에서는 1960년대부터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일자리에서 얻는 소득이 낮은 세금과 결합하면서, 사적 자산이 공적 복지의 기능적 등가물로 기능해왔다(김도균 2022; 윤희식 2018). 중산층에게 집과 저축은 자신

1) OECD가 정의한 사적 지출은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사적 이전을 포함하지 않는다(OECD 2019).

이 직면한(할 수 있는) 실직, 노후, 질병 등 소득 상실에 대응하는 사적 소득보장기제이자, 자녀들이 독립적 생활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가 사적 지출, 사적 이전 등 사적 소득보장기제를 배제하고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한국 복지국가의 모습을 온전히 그려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 에스핑 안데르센(Esping-Andersen 1999: 36)이 지적한 것처럼 복지체제의 구성에서 공적 기제(국가)와 사적 기제(시장과 가족)는 서로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²⁾ 문제는 현실에서 사적 지출, 사적 이전, 사적 자산 등 시장과 가족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소득보장기제는 공적 제도보다 더 역진적 선별성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³⁾ 특히 개발국가 복지체제의 유산이 공고한 한국 복지체제에서 사적 영역의 대응 기제가 공적 복지보다 더 역진적 선별성을 갖는다면, 한국 복지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역진적 선별성을 갖고 있을 수 있다.⁴⁾ 만약 현실이 이러하다면, 한국 복지국가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는 공적 영역을 넘어 사적 영역을 아우르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초해 이 연구는 사적 영역에서 나타나는 역진적 선별성을 경험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한국 복지체제의 역진적 선별성이 단순히 공적 복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윤홍식 2019; 윤홍식·이충권 2022) 사적 영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사적 영역에서의 역진적 선별성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먼저 다음 절에서는 사적 영역에서의 역진적 선별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본 개념과 이론적 분석틀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이어서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마지막 절에서는 이 연구의 중요한 결과를 정리하고, 이러한 결과가 한국 복지체제에 주는 정책 함의에 대해 검토했다.

2) 원문에는 세 개의 기둥(국가, 시장, 가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Esping-Andersen, G. (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3) 선별주의가 자산조사에 입각해 복지급여의 대상자로 취약계층을 선별하는 것과는 반대로 역진적 선별성(선별주의)은 선별주의와 반대로 복지가 상대적으로 안정적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받는 계층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기존 역진적 선별성 논의의 모호한 측면을 비판하고 역진적 선별성의 개념을 보다 더 정치하게 논의한 글로는 최근에 출간된 다음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윤홍식, 이충권 (2022). 한국 복지국가의 역진적 선별성: 소득계층과 고용지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 38(2). 49-82.

4) 개발국가 복지체제란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일자리에서 얻은 소득이 낮은 세금과 결합해 공적 복지를 대신하는 복지체제를 일컫는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라. 윤홍식 (2018). 박정희 정권 시기 한국 복지체제: 반공개발국가, 복지국가의 기능적 등가물. *한국사회정책*. 25(1). 195-229.

2. 분석을 위한 기본 개념과 분석 틀

1) 사적 소득보장기제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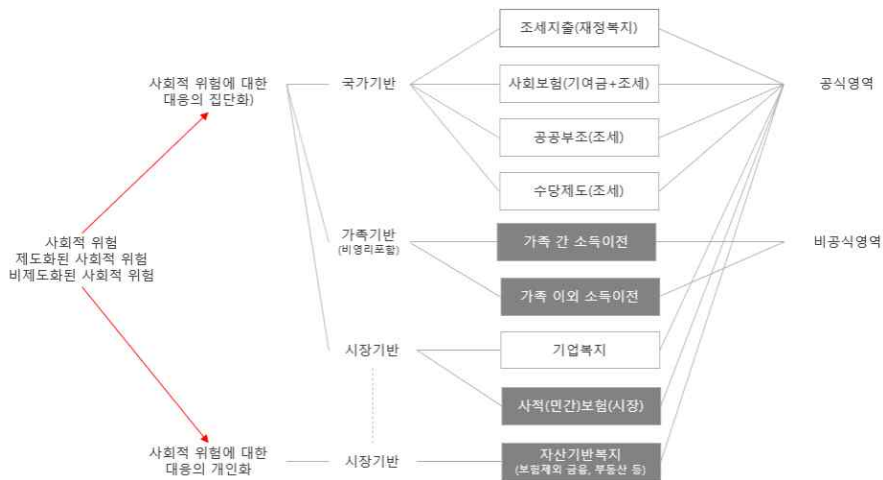
사적 영역의 역진적 선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먼저 사적 영역에서 이루지는 소득이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지만, 사적 영역에서 이루지는 소득이전에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포함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다. OECD(2019: 5)는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소득이전을 ‘사적 사회지출(Private Social Expenditure)’로 개념화한다(사적 “사회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데 주목하라). 사적 사회지출은 사적 영역에서 지급되는 사회적 급여로 법정 제도와 개인 간 재분배를 일컫는다. 구체적으로 보면 법정급여로는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사적 건강보험, 강제적 기여에 기초한 사적 연금, 상병수당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자발적으로 제공되는 급여로는 자발적 기여에 의한 사적 연금, 기업이 제공하는 아동 돌봄 급여, 비영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 등이 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 대만, 베트남 등 동아시아 복지체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 간 사적 이전은 OECD가 사적 사회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 학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적 복지는 주로 개인 간에 이루지는 소득이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적 소득이전”으로 개념화해 사용한다. 특히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형태를 가장 중요한 사적 소득이전이라고 보고 있다(손병돈 2021: 28; 황남희·이원진·진화영·이상협·안서연 2021: 187). 사적 복지의 영역을 OECD가 정의한 것보다 더 크게 확장하면, “복지혼합경제(Mixed Economy of Welfare)” 또는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사적 영역을 이렇게 접근하면, 사적 영역은 공적인 제도를 제외하고 공식·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득이전과 서비스를 모두 포괄한다(Powell 2011(2007)). 이처럼 연구자와 기관에 따라 사적 복지로 간주되는 형태는 다양해서 하나의 일관된 원칙으로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

(1) 사회적 위험의 두 성격

이 연구는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사적 소득보장기제를 개념화하고 몇 가지 하위 항목으로 구분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득이전(급여)”이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를 포괄하려고 했다. 하지만 사적 복지를 개념화하고 정리하는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논쟁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먼저 복지급여를 개념화하는 통상적인 방식에 따르면 실업, 질병, 노령 등 소득상실에 대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으로 소득을 이전한다면, 공적이든, 사적이든, 소득이 이전된다면 ‘소득보장’을 위한 소득이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소득보장을 이렇게 정의할 경우,

“자산”은 사적 소득보장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개인이 시장에서 구입하는 민간보험은 (중간에 보험을 해지하지 않는다면) 실업, 질병, 노령 등 특정한 사회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적 대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은 직접적으로 소득상실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적 소득보장제도라고 개념화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실업, 노령 등과 같은 소득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사적 급여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자산)은 ‘자기보험 수단’으로서 공적 복지의 대체수단이라고 간주된다(Sendi, Hrast and Kerbler 2021; Catles 1998; Sherraden and Gilbert 1991). 자산소유 여부와 복지태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도(김도균 2022) 자산을 공적 복지의 대체물 또는 기능적 등가물이라고 전제하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연구들은 보면 공적 연금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자산(주택)을 공적 연금의 대안으로 검토하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Adkins et al. 2021(2020); Sendi et al. 2021). ‘(임금)소득’ 상실을 사회적 위험으로 간주해 대응하는 ‘복지국가’의 전형적인 소득보장 제도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 소득상실(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방식: 사회적 위험의 집단화와 개인화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는 ‘사적 소득보장’에 관한 논의에 앞서, “사회적 위험”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회적 위험을 “제도화된 사회적 위험”과 “비제도화된 사회적 위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재정의했다.⁵⁾ 제도화된 사회

5) 구사회적 위험과 신사회적 위험으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이 개념은 이미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라 자산 소유 유무를 사회적 위험으로 새롭게 포괄하려는 이 논의의 취지에 맞지 않아, 새로운 개념화를 시도했다. 구사회위험

적 위험은 우리가 익숙한 '(주로 고용관계에 기초한 임금)소득 상실'이 발생하는 위험으로 정의했다. 실업, 질병, 노령 등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으로 복지국가의 확대 과정에서 대응이 제도화된 사회적 위험이다. 반면 비제도화된 사회적 위험은 실업, 질병, 노령처럼 직접적인 소득상실과 관련되어 있지 않지만(그래서 복지국가가 제도적으로 대응하는 사회적 위험은 아니지만), 빈곤, 불평등 등과 밀접히 관련된 사회적 위험으로 자산소유 여부 및 정도와 관련된다.⁶⁾

엣킨스와 동료들(Adkins et al. 2021(2020))이 주장한 것처럼 삶의 질을 가르는 핵심적 기제가 소득격차에서 자산격차로 이동하고 있다면, 개인과 가족이 (적절한 수준의) 자산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사회적 위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인과 가족의 자산소유(정도) 유무는 개인의 교육기회와 밀접히 연관되어, 개인의 미래 소득과 직업 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위험은 앞서 언급했듯이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임금)소득의 상실을 사회적 위험으로 전제했던 기존 복지국가에서는 제도화하지 않았던 사회적 위험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해 우리는 사회적 위험을 제도화된 사회적 위험만이 아닌 자산 소유 유무(와 수준)라는 제도화되지 않은 사회적 위험을 포괄한 개념으로 정의했다. '자산 소유 유무'를 사회적 위험이라는 개념으로 포괄할 때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사적 소득보장기제가 복지국가 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위험을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논쟁적이지만, 전체 부에서 임금소득의 비중이 감소하는 현재 상황에서 사회적 위험을 재정정의하고 복지국가를 재구조화하기 위한 경험적 연구를 축적하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2) 집단 대 개인, 그리고 국가, 가족, 시장

사회적 위험을 이렇게 정의하면, 다음 과제는 우리가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방식을 구분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위험에 집단화하는 방식은 두 명 이상의 개인이 사회적 위험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집단화'와 오로지 개인이 독립적으로 대응하는 '개인화'로 구분할 수 있다(이 개인화 방식은 자산기반복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먼저 사회적 위험에 집단화된 대응을 방식을 살펴보자. 통상적으로 우리는 집단화된 대응방식이라고 하면, 국가(또는 공공 기관)가 주도하는 사회적 연대에 기초한 사회보험과 같은 '국가기반' 대응방식을 떠올린다. 국민

은 통상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상실과 관련된 사회적 위험으로 실업, 질병, 노령 등을 의미하며, 신사회위험은 돌봄, 서비스의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화(비정규직화) 등을 의미한다(Taylor-Gooby(ed.) 2004).

6) 물론 제도화된 사회적 위험 또한 빈곤과 불평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은 실직자를 즉각적으로 빈곤에 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도화된 사회적 위험은 어디까지나 직접적으로 '소득상실'이라는 위험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소득상실'을 전제하지 않는 비제도화된 사회적 위험과 상이하다.

연금과 같은 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 아동수당과 같은 수당제도,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조세지출⁷⁾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공적 사회보장제도만이 사회적 위험에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은 아니다. 시장에서 개인이 구매하는 개인연금은 시장에서 그 개인 연금을 구매한 가입자 내에서 사회적 위험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 방식도 사회적 위험에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두 가지 대응방식은 큰 차이가 있다. 시장기반 대응은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집단화의 목적이 공익이 아니라 사익을 추구한다는 것과 그 대응 주체가 국가(또는 공공기관)가 아니라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라는 점이다. 또한 위험을 공유하는 가입자가 강제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선택으로 가입한다는 점도 다르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가입대상의 보편성에서 두 방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물론이고 가입자 간 급여수준의 격차도 두 방식 간에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민간보험과 같은 시장에 기반한 대응방식에서 급여수준은 철저히 납입한 보험료에 비례적으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논쟁이 되는 사안은 가족기반 대응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이다. 가족 간 소득이전을 집단화된 대응방식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인데, 두 명 이상의 개인이 사회적 위험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집단화된 대응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가족 간 소득이전’처럼 가족기반 대응방식은 혈연 또는 혼인으로 연결된 소수의 사람들로 그 대상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국가기반은 물론 시장기반 대응 방식보다도 사회적 위험을 공유하는 집단의 규모가 매우 협소하다. 두 가지 성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가족기반 대응이 시장기반 대응처럼 소득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고, 소득이전 수준도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비례적으로 나타날지 검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부유한 부모는 일반적으로 자녀도 부유할 가능성이 높고, 그 반대로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부유한 가족은 가족 구성원 간 소득이전이 없이도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기반 대응과는 달리 소득수준이 높다고 해서 가족 간 소득이전의 규모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다른 하나는 가족기반 대응은 자산처럼 비제도화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 기제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가족 간 소득이전은 실업, 질병, 노령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혈연 또는 혼인으로 맺어진 가구가 중산층 이상의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이전될 수도 있고, 단순히 선물과 증여의 목적으로 이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자산기반복지는 세 가지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앞에서 언급한 소득보장기제의 대부분은 사회적 위험에 대해 크든 작든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데 반해, 자산기반복지는 사회적 위험에 개인적 차원에서 대응한다. 누구와도 위험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

7) 사회적 위험과 관련해 조세지출은 실업, 질병, 노령 등 제도화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은 아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은 특정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제도가 아니라 개인 또는 가구의 소득을 보존해주기 위한 제도이고, 근로장려세제(EITC) 또한 근로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산기반복지'의 이러한 특성은 자산이 철저히 사적소유에 기반하기 때문이다.⁸⁾ 자산을 팔아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건, 자산에서 소득을 얻어서 대응하건 그 소득은 철저히 개인에게 귀속된다. 물론 자산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을 가족 구성원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산도 사회적 위험에 가족단위의 집단적 대응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자산기반복지가 앞서 언급한 소득보장기제와 다른 두 번째 특성이다.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임금소득처럼 시장에서 1차 분배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소득보장기제와 차이가 있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 공적 복지는 통상적으로 시장 이외의 분배라는 의미로 재분배 또는 2차 분배라고 불린다. 개인연금과 같은 민간보험도 임금, 배당, 임대료 등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1차 분배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 분배와는 성격이 상이하다. 임금소득자가 임금을 가족구성원과 나누어 쓴다고 해도, 임금이 개별 노동자의 소득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자산도 마찬가지이다. 자산소득을 나누어 쓸 수는 있지만, 그 소득은 개인의 소득이고 이 자산소득을 나누어 쓸지 여부는 개별 소유주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자산기반복지가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소득보장기제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복지국가의 경제적 토대가 고용관계에 기반한 임금소득에서 자산 소유에 기반한 자산소득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이러한 전환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면, 복지국가의 대응 방식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복지국가가 임금소득 상실에 대응해 공적 복지제도를 만든 것처럼, 자산소득 상실에 대응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까? 이 논문에서 자산기반복지의 마지막 특성을 다루지는 않겠지만, 자산기반복지의 중요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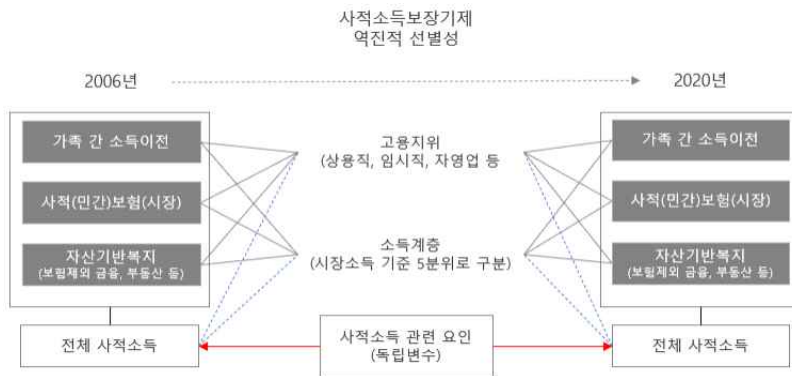
이상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적 소득보장기제를 크게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집단적 방식으로 가족기반 소득이전, 가족 이외 소득이전, 시장기반 소득이전과 개인적 대응방식인 자산기반복지로 구분했다. 특히 '자산'은 '자산기반복지'라는 개념으로 복지국가의 특성을 비교하는데, 자주 사용했지만, 자산기반복지의 성격을 공·사적 영역에서 제도화된 소득보장기제와 비교해 어떤 특성이 있는지는 드러내지는 못했다. 반면 이 연구는 자산기반복지의 특성을 복지국가의 다양한 소득보장기제와 함께 개념화하고 구분해서,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이상의 개념화에 기초해 사적 소득보장기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족 간 소득이전', '민간보험', '자산소득(자산기반복지)'이 소득계층과 노동시장지위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했다.

8) 물론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도 있고 이때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은 공동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실제 소유권은 개인별로 분할되어 있다.

2) 분석을 위한 기본 틀

이 논문의 개략적인 분석틀은 [그림 2]와 같다. 먼저 한국 사회의 전체 사적이전소득이 고용 지위와 소득계층에 따라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분석했다. 분석은 두 방향으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전체 사적이전소득이 소득계층과 고용지위에 따라 어떻게 배분되고 변화하는지를 비율로 측정했다. 다른 하나는 절대 규모의 수준과 변화를 측정했다. 특히 사적이전소득의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우리는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변화, 예를 들어, 2008년 기초노령연금 도입, 국민연금 시행 20년, 2013년 기초연금 도입, 2018년 기초연금 급여 인상 등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변화가 사적이전소득의 규모와 수급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분석을 위한 기본 틀



다음으로 사적이전소득을 구성하는 세 개의 중요한 소득원천(가족 간 소득이전, 민간보험 급여, 자산소득)이 소득계층과 고용지위에 따라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전체 사적이전소득을 분석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분석했다. 분석 시 전체 인구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와 노령인구로 구분하여 각각 살펴봤다. 마지막으로는 전체 사적이전소득과 세 가지 사적이전소득이 어떤 경제·사회변수와 관련 있는지를 다변량 분석의 차원에서 이해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3년간 결합시계열자료를 바탕으로 일반화최소제곱법(GLS, Generalized Least Squares)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사적 소득이전이 소득계층과 고용지위에 따라 어떻게 역진적으로 분배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사적이전소득이 상대적으로 안정적 고용을 보장받고 높은 소득이 있는 계층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한국 복지국가의 소득보장기제의

역진적 선별성은 공적 소득보장기제에서 드러난 정도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산업화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거의 모든 정부가 취약한 공적 복지를 기능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지원·장려했던 사적 자산축적이 공적 복지를 보완하기보다는 계층 간 불평등을 확대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적자산축적이 특정 계층에게만 취약한 공적 소득보장기제의 보완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에게 한국 복지국가에서 사적 소득보장기제의 기능과 역할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3. 연구방법

1)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10년 이상 자료가 축적된 한국복지패널 조사자료⁹⁾ 중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3년간 횡단 및 종단 시계열자료를 활용하여 당해 연도 시장소득과 고용지위에 따라 연구대상 집단을 구분하고, 그 집단 내 가구의 사적이전소득액을 토대로 집단별 집계 자료(aggregate data)를 산출하여 시계열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전체 인구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인구, 노령인구로 나누어 각 인구집단에 대한 시장소득분위별, 고용지위별 사적이전소득의 비율과 금액 규모의 횡단적 양상과 종단적 변화를 동태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전체 사적이전소득 및 가족 간 소득이전, 사적(민간)보험, 자산기반복지에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13년간 결합시계열자료(pooled time-series data)를 바탕으로 일반화최소제곱법(GLS, Generalized Least Squares)을 활용하였다. 결합시계열자료는 횡단자료뿐만 아니라 종단시계열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 단위 간, 시점 간 변화를 모두 살펴보는 데 유리하다. 또한 선형회귀분석에서 오차항의 분산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가중치 행렬을 공분산행렬의 역행렬로 대체함으로써 오차항의 분산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통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GLS는 여러 사후분석 방법을 실시하여 회귀모형의 가정 진단을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고, 자료의 특성에 맞춰 필요 시 이에 대한 교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9)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는 일반가구와 저소득층 가구를 구분하여 두 층으로부터 각각 3,500가구씩 총 7,000가구를 층화이중추출법에 의해 추출된 표본으로 선정하여 2006년부터 매년 1회 한국복지패널조사를 실시해왔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2). 한국복지패널은 전구단위 대표본 가구와 개인별 미시자료를 구축하고 있어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뿐만 아니라 공적 복지, 자산 및 소득 원천을 횡단면과 종단면 모두에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GLS분석의 종속변수로 전체 사적이전소득 금액뿐만 아니라 세부 유형인 가족 간 소득이전, 사적(민간)보험, 자산기반복지를 각각 모형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위 회귀모형들에서 독립 변수로는 전년도 사적이전소득, 시장소득을 연속형 변수로 설정하였고, 인구집단의 경우 경제활동인구를 더미변수로 설정하여 노령인구와 비교하였다. 고용지위는 상용직을 더미변수로 두어, 임시일용직, 고용주, 자영업과의 비교를 설정하였다. 한편 결합시계열자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기상관문제¹⁰⁾를 완화하기 위해, 대상기간 t 기에서의 종속변수 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대상 기간 전년도(즉 $t-1$ 기)의 해당 사적이전소득액을 독립변수군과 함께 투입하여 통제하였다.

2) 용어의 조작적 정의

상기한 바와 같이 사적이전소득은 가족 간 소득이전, 민간보험 급여, 자산소득 등 세 주요 소득원천을 포함한 전체 사적이전소득뿐만 아니라 이를 각각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가족 간 소득이전은 가구원이 아닌 부모로부터의 보조금(현금 및 현물), 가구원이 아닌 자녀로부터의 보조금(현금 및 현물)을 포함한 연간소득액을 의미한다. 사적(민간)보험 급여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의한 연간소득액을 포함한다. 자산소득은 이자, 배당금과 부동산 임대료 소득 등을 말한다. 소득분위 산정을 위한 시장소득은 경상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사회보험, 기초보장급여, 기타 정부보조금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임금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농업소득, 부업소득 등을 포함한다. 이 시장소득을 전체 인구, 경제활동인구, 노령인구별 각 5분위로 나누어 분위별 사적이전소득을 분석하였다. 고용지위는 가구주의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를 의미하고,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업을 포함하여 비교하였다. 이 외에 자활근로, 공공근로,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등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태어난 연도 기준 조사 당해 연도 15세 이상 64세까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 노동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당해 연도 연 나이를 계산하여 65세 이상인 경우 노령인구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다만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는 출생연도만을 변수로 제공하고 있어서 만나이의 정확한 추정이 어려운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차선택으로 조사 연도 당시 연 나이를 기준으로 경제활동 인구연령을 조작적 정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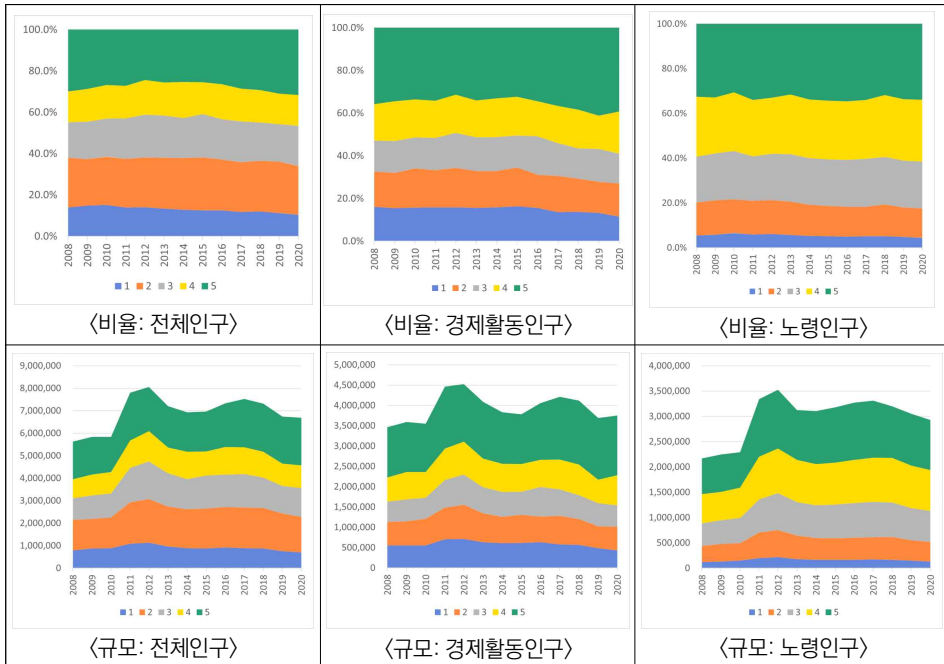
10) 결합시계열자료는 많은 경우 오차항에 있어서 시기에 따른 상호관련성이 나타날 수 있다.

4. 연구결과

1) 소득에 따른 사적이전소득 차이와 변화

(1) 전체 사적이전소득

[그림 3] 시장소득분위별 전체 사적이전소득 비율 및 규모



한국복지패널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장소득분위별 전체 사적이전소득비율을 살펴본 결과 [그림 3]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연도에서 경제활동인구와 노령인구 둘 다에서 시장소득 5분위가 전체 사적이전소득의 20~30%를 차지해 다른 소득분위에 비해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반면, 소득 1분위의 점유율은 20%에 미치지 못했다. 시계열적 변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적소득의 점유율과 관련해 5분위는 2013~2014년을 거치면서 그 몫이 증가하는 데 반해 하위 20%는 2009년부터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다만 공적 소득이전과 비교하면 소득계층 간 역진성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실제로 2020년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기준 상위 20%의 국민연금 가입율이 100%에 가까운 데 반해, 하위 2%의 가입률은 60%에도 미치지 못했다. 공적연금의 급여 수준까지 고려하면 두 집단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윤홍식·이충권 2022).

한편 노령인구집단에서도 상대적으로 고소득 집단인 4·5분위의 점유율이 60%를 넘어 사적

이전소득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2분위의 점유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소득하위 1·2분위의 다수가 사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이 은퇴이후에 공적 사회보장제도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넘어 사적 소득이전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공적 소득이전과 사적 소득이전 간에 대체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상반된 결과가 제시되고 있지만(황남희, 이원진, 진화영, 이상협, 안서연 2021; 박종선, 정세은 2020; 최유성, 황남희 2020), 분명한 사실은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확대가 사적 소득이전을 대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본 연구 분석 시작 시점인 2008년은 국민연금의 완전노령연금 수급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국민연금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고 고용이 안정적인 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제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적연금의 확대가 사적 소득이전을 대체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다. 다만 2008년에 제도화된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이 2013년부터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으로 확대되면서, 거의 모든 계층에서 사적이전소득의 규모가 감소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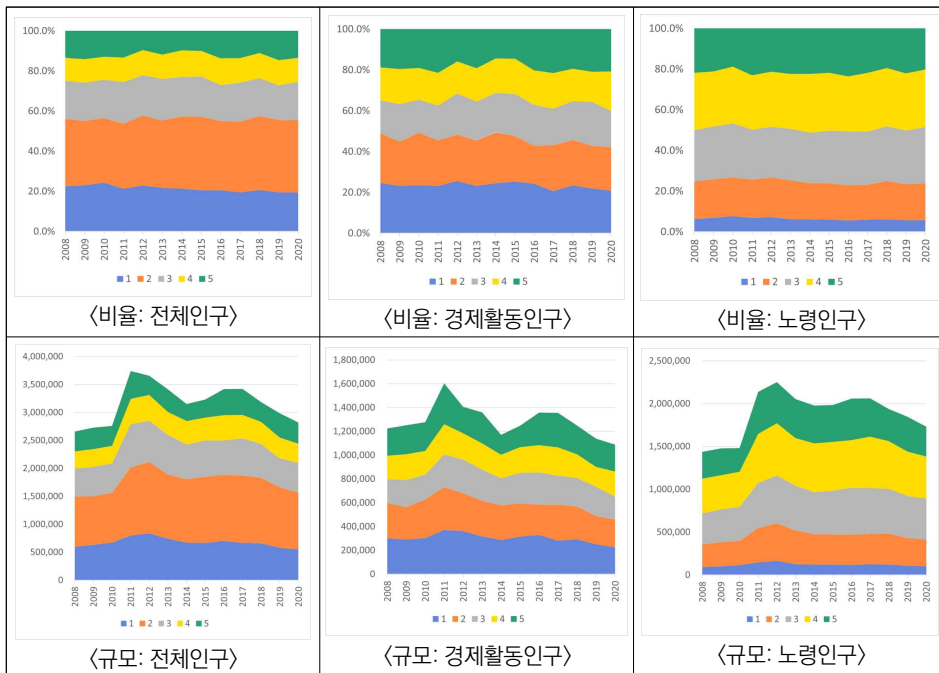
(2) 사적이전소득 유형에 따른 특성

전체 인구의 가족 간 소득이전의 소득계층별 점유율을 보면 [그림 4]에서 보는 것처럼 2010년부터 1분위의 점유율이 낮아지는 데 반해 2분위의 점유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큰 틀에서 보면 분석기간 동안 소득계층에 따른 점유율 변동은 크지 않았다. 주목할 결과는 경제활동인구와 노령인구의 소득계층별 점유율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경제활동인구를 보면 상대적으로 소득하위 20%의 점유율과 소득이전 규모가 큰 것에 반해, 노인인구의 경우 그 비율과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경제활동인구 집단의 1분위가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을 막 시작한 청년세대의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청년세대에 대한 부모세대의 사적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러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나리와 김교성(2021)은 청년패널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청년 대부분이 일정 수준의 고용, 소득, 부채 등 불안정성을 경험하며, 부모로부터 사적이전소득에 의존하는 기간이 더욱 길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용호와 이원익(2022)의 연구에서도 청년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청년층의 불안정한 노동시장 실태를 확인하고 일자리의 안정성과 부채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청년 상당수가 가족 간 소득이전으로 생활비의 부족분을 메우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노인집단에서 소득 하위 20%(1분위)의 가족 간 이전소득의 점유율이 낮은 이유는 자녀세대와 부모세대(노인세대)가 동질적 집단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모가 가난하면, 자녀도 가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소득 노인층의 경우 사적으로 소득을 이전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소득수준이 높은 자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연아·정원오 2016; 박정민·이기원·하은

술 2018; 김지훈·강욱모 2021). 흥미로운 점은 앞서 전체 사적이전소득을 검토하면서 이야기 했던 것처럼, 기초연금이 시작된 2013년과 기초연금이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높아진 2018년을 계기로 노인집단의 가족 간 소득이전이 전 계층에서 감소했다는 점이다. 기초연금의 확대가 가족 간 소득이전의 규모를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1~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적 소득이전의 규모가 커지면서 사적 소득이전이 완만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황남희·이원진·진화영·이상협·안서연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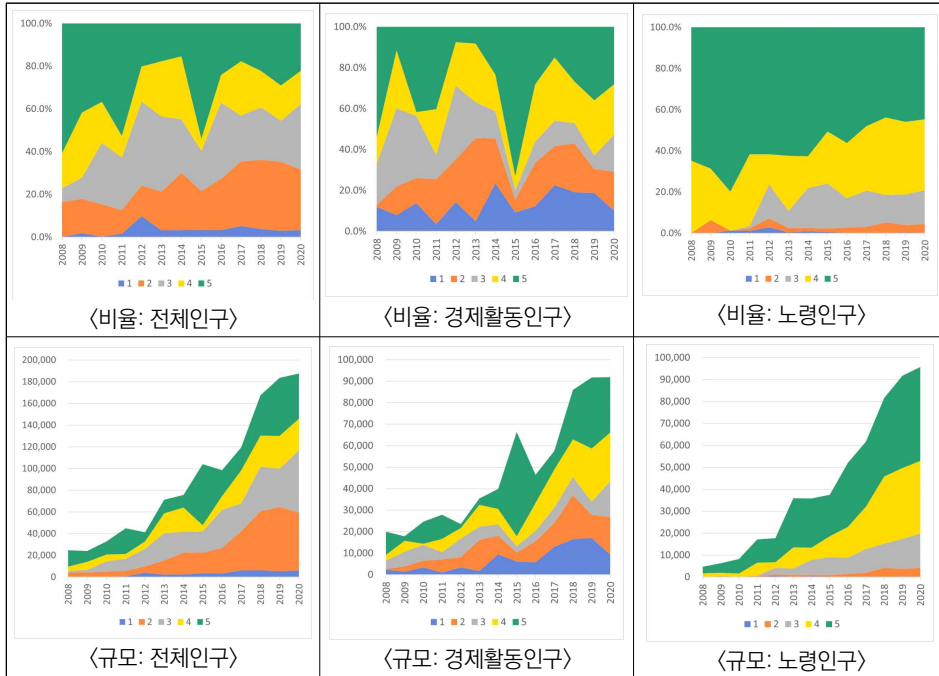
[그림 4] 시장소득분위별 가족 간 소득이전 비율 및 규모



다음으로 금융상품인 사적보험을 보면 급여 규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그림 5]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적보험 급여의 규모는 경제활동인구집단과 노령인구집단 모두 급격하게 증가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경제활동인구는 약 5배, 노령인구는 약 26배 증가했다. 앞서 검토했던 가족 간 소득이전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일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다른 경향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경제활동집단과 노인집단의 소득계층별 사적보험 급여의 점유율을 비교해보자. 경제활동인구집단의 경우 특정한 경향성을 발견하기 어렵지만, 노인집단의 경우 사적 보험급여의 대부분이 3·4·5분위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소득 4분위 집단의 비중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분위별 사적

보험 급여 규모의 변화를 보면, 경제활동인구 집단에서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5개 소득분위 모두 사적보험 급여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시장소득분위별 사적(민간)보험(시장)소득 비율 및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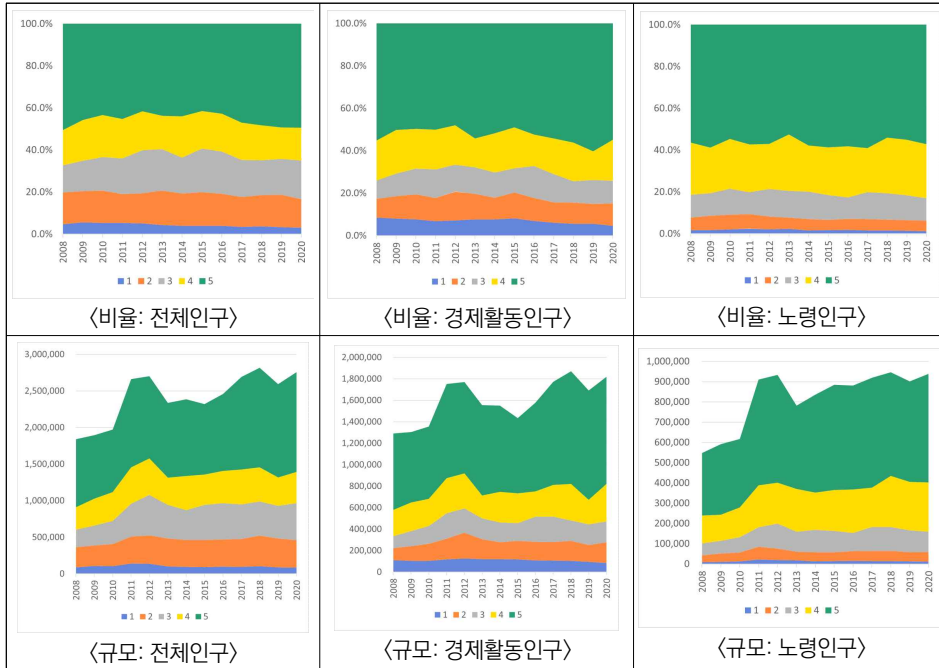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 상황을 보면 1분위 집단의 경우 사적보험 급여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에 반해 2·3·4·5분위의 경우는 오히려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외적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저소득집단이 사적보험을 해지해 현금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김동겸과 정인영(2022)의 보험계약 유지율에 대한 연구를 보면, 경기침체에 소비자들이 보험료 납입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 해지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향후 경기침체로 인한 가계의 경제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보험계약 유지율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노령인구집단은 소득계층 간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는데 소득하위 1·2분위는 사적보험으로부터 의미 있는 급여를 받지 못하는 반면, 4·5분위는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급여를 사적보험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적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사적보험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집단의 안전망이라는 기존 연구 결과를 확인해준다. 이는 또한 김대중 정부 이래 역대 정부가 추진한 사적보험에 대한 조세 지원의 최대 수혜자가 중간소득 이상의 계층이라는 것도 확인해준다.¹¹⁾

마지막으로 부동산, 이자, 배당 등으로 발생하는 자산소득(자산기반복지)의 소득분위별 비율을 살펴보자. 예상했던 것과 같이 자산소득 대부분은 경제활동인구집단과 노인인구집단 모두 5분위가 압도적 점유율을 보였다. 특히 소득 5분위의 자산소득 규모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더 증가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더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고소득층에게는 자산을 더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분석이 이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옥스팜 2021; 송상운 2021). 옥스팜(Oxfam) 2021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불평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하면서 고소득층 계층은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빠르게 회복한 반면, 취약 계층은 그 타격을 회복하는데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한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한 송상운(2021)의 연구에서도 하위 10% 대비 중위소득 비율이 코로나19 이후 더욱 커져 가구소득 불평등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업·비경황 증가와 저소득 취업가구의 소득감소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사적 소득이전은 사회적 연대가 가족에 기반하는지, 시장에 기반하는지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사회적 연대가 가족에 기반하는 가족 간 사적 소득이전의 경우 소득분위별 점유율을 보면 지난 20여 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가족 소득이전의 규모를 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증가하다가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3년부터 전 계층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이라는 공적 소득보장제도가 가족 간 사적이전을 일정 수준에서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사적보험과 자산소득이전을 보면 고소득층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급여수준도 소득계층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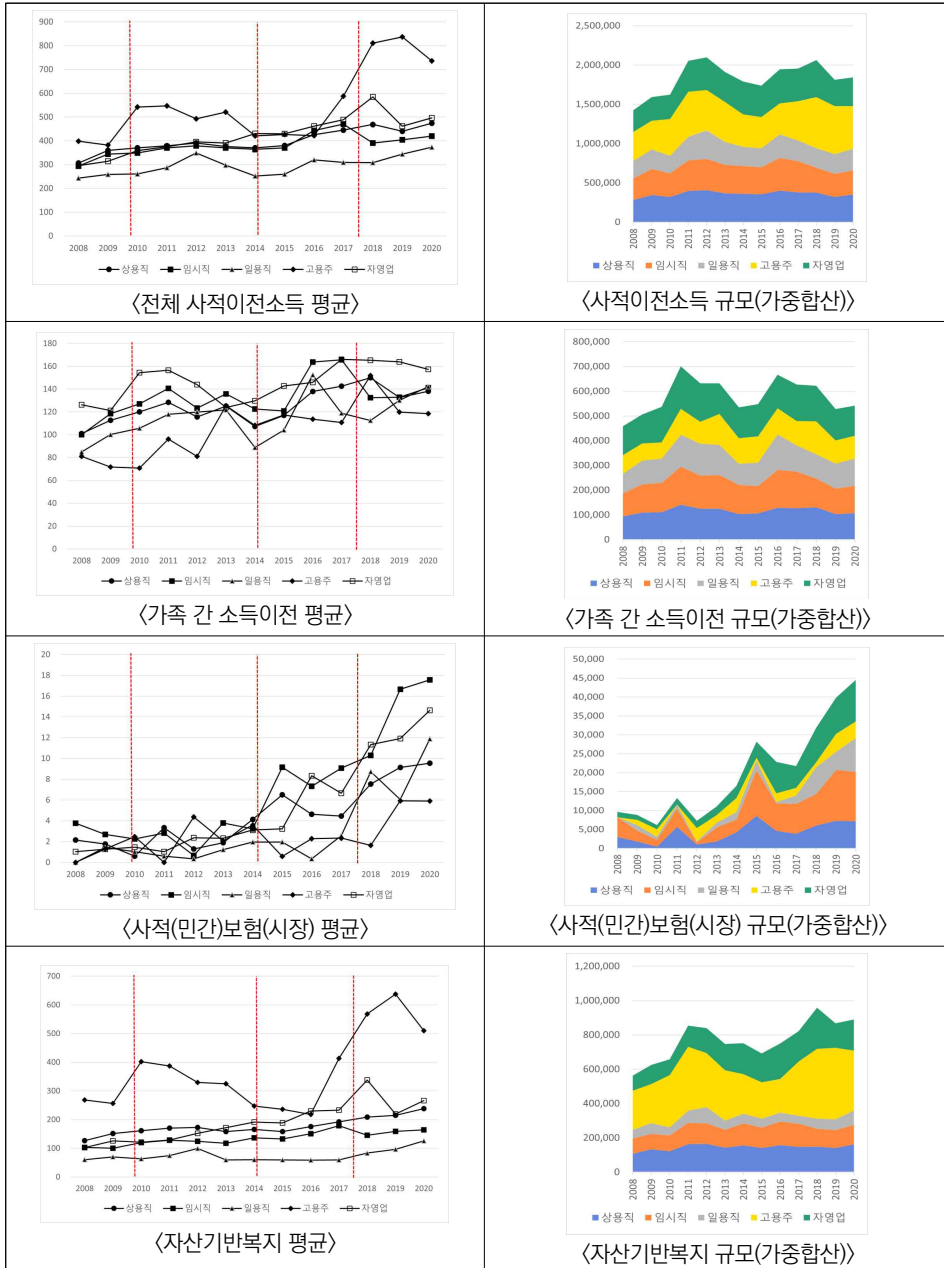
11) 2002년 이후 개인연금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되었으나, 소득공제방식이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 소득분배에 역진적 성격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2013 세법 개정을 통해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김수성·차명기 2016).

[그림 6] 시장소득분위별 자산기반복지 비율 및 규모



2) 경제활동인구의 고용지위에 따른 사적이전소득의 차이와 변화

[그림 7] 고용지위별 사적이전소득¹²⁾



12) 가중합산=(전체총액×고용지위별평균)÷고용지위별평균전체합

고용지위에 따른 사적 소득이전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은 사적 소득보장 기제에서도 공적 소득보장 기제와 같이 고용지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공적 소득보장이 고용지위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은 기존 연구에서 논의된 바 있지만, 그런 차이가 사적 소득이전에서도 나타나는지는 분명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고용지위가 안정적일수록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을 것이고, 소득이 높다는 것은 생활에 필수적인 지출 이외에 사적 자산 축적을 위해 사용할 소득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고용지위에 따른 사적 소득이전의 차이가 공적 소득이전에서도 같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되었다(윤홍식·이충권 2022).

실제로 [그림 7]를 보면 고용지위에 따른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차이는 사적 소득의 형태에 따라 상이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연대가 가족에 기반하는 가족 간 사적이전의 경우 고용지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 가족 간 소득이전의 소득계층에 따른 차이가 분명했던 것과는 대비된다. 주목할 점은 상용직 노동자의 가족 간 사적이전 소득의 비중과 이전 규모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는 점이다. 이는 상용직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3) 전체 및 세부 사적이전소득 규모(또는 수급여부)에 미치는 요인

GLS추정방법을¹³⁾ 바탕으로 전체 사적이전소득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시장소득이 높을수록 전체 사적이전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전체 사적이전소득이 높아졌다. 사적 소득을 사회(민간), 자산기반복지, 가족 간 소득이전 등 세분하여 각각 변수에 대한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의 영향을 살펴봤을 때도, 시장소득 및 연령이 각 세부 사적이전소득 유형에 정적(正的)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용지위는 전체 사적이전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만 사적 소득의 세부 유형별로 살펴봤을 때 상용직에 비해 고용주, 자영업 등이 자산으로부터 얻는 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활동인구집단과 노령인구집단을 따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시장소득이 증가할수록 전체 사적이전소득 및 세부 유형 모두 커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령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집단에서는 사적 소득 세부유형과 정적 관계를 보였고, 노령인구집단의 경우 자산기반복지 및 가족 간 소득이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주의 경우 상용직에 비해 사적(민간) 보험, 자산기반복지 소득이 큰 반면, 가족 간 소득이전은 임시직, 자영업이 상용직에 비해 많은

13) 회귀분석을 위한 가정 진단 결과, 잔차들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 최소자승법 추정량이 최선의 선형 불편추정량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수정하고자 Stata 통계 프로그램의 xtglm을 통해 GLS 분석을 실행하였다. xtglm 방법은 패널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이분산성을 가정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다만 자료의 성격에 따라 오차의 분산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가정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다소 상이할 수 있다.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중·상층의 안정된 고용과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소득은 중·상층이 사회보험의 주 대상자가 될 뿐만 아니라(윤홍식·이충권 2022), 사적자산을 축적할 기회도 제공했다. 그리고 이렇게 축적된 중·상층의 사적자산은 공적 사회보장제도과 함께 중·상층이 실업, 질병, 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사적안전망(자산기반복지)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동 시장에서 지위가 불안정하고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은 노동시장의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공적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사적자산을 축적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한국 사회에서 저소득층은 공적 사회보장제도는 물론 사적 안전망에서 배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목할 결과는 자영업자인데, 소득 감소분의 상당액을 가족 간 소득이전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하여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보험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주소득원인 사업소득이 장기간 감소하고 있고 이러한 감소분을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으로 보충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났다(이태열 2020). 후속연구가 필요한 흥미로운 결과이다.

[표 1] 결합데이터 GLS 회귀모형(통합인구)

독립변수 \ 종속변수	전체 사적이전소득		사적(민간)보험		자산기반복지		가족 간 소득이전	
	계수	오차	계수	오차	계수	오차	계수	오차
전년 사적이전소득	0.001	0.002	0.393 ***	0.004	0.641 ***	0.003	0.307 ***	0.003
시장소득	0.055 ***	0.008	0.001 ***	0.000	0.022 ***	0.000	0.001 ***	0.000
연령	5.808 *	2.871	0.138 ***	0.019	1.872 ***	0.132	2.565 ***	0.091
고용지위 (상용직)								
임시직	-5.667	100.483	3.187 ***	0.659	20.989 ***	4.606	6.071	3.150
일용직	97.452	129.554	-0.692	0.849	17.370 **	5.938	-11.807 **	4.063
고용주	-158.365	215.044	-2.137	1.409	23.676 *	9.859	-30.960 ***	6.742
자영업	135.233	113.631	-0.746	0.745	25.518 ***	5.208	44.256 ***	3.565
χ^2	45.89 ***		12131.52 ***		65753.13 ***		13003.91 ***	

* p<0.05; ** p<0.01; *** p<0.001

주. (기준집단). 고용지위: 상용직; 전년해당사적이전소득, 시장소득, 연령의 경우 연속형 변수

[표 2] 결합데이터 GLS 회귀모형(경제활동인구)

독립변수 \ 종속변수	전체 사적이전소득		사적(민간)보험		자산기반복지		가족 간 소득이전	
	계수	오차	계수	오차	계수	오차	계수	오차
전년 사적이전소득	0.000	0.002	0.310 ***	0.004	0.622 ***	0.003	0.256 ***	0.003
시장소득	0.056 ***	0.009	0.001 ***	0.000	0.022 ***	0.000	0.002 ***	0.000
연령	0.981	3.695	0.134 ***	0.025	1.433 ***	0.180	0.308 **	0.111

고용지위 (상용직)								
임시직	23.849	103.606	2.666 ***	0.695	17.913 ***	5.039	7.919 *	3.122
일용직	181.277	137.036	-0.508	0.920	16.507 *	6.665	-4.825	4.129
고용주	-146.333	218.729	-3.951 **	1.468	17.055	10.639	-25.208 ***	6.590
자영업	162.483	124.502	-0.217	0.835	29.565 ***	6.055	15.294 ***	3.751
χ^2	43.25 ***		5857.98 ***		49390.65 ***		5523.93 ***	

* p<0.05; ** p<0.01; *** p<0.001

주. (기준집단)인구집단; 경제활동인구; 고용지위: 상용직. 전년해당사적이전소득, 시장소득의 경우 연속형 변수

[표 3] 결합데이터 GLS 회귀모형(노령인구)

독립변수	종속변수		전체 사적이전소득		사적(민간)보험		자산기반복지		가족 간 소득이전	
	계수	오차	계수	오차	계수	오차	계수	오차	계수	오차
전년 사적이전소득	0.001	0.005	0.701 ***	0.007	0.754 ***	0.005	0.419 ***	0.008		
시장소득	0.101 *	0.046	0.001 **	0.000	0.040 ***	0.001	0.020 ***	0.002		
연령	-9.875	19.097	0.032	0.102	1.628 **	0.556	5.837 ***	0.670		
고용지위 (상용직)										
임시직	-1700.872 **	534.242	4.745	2.848	-4.989	15.550	40.830 *	18.633		
일용직	-1745.990 **	563.476	-0.023	3.004	4.045	16.403	36.704	19.655		
고용주	-1381.190	1060.246	21.880 ***	5.652	75.643 *	30.880	-45.096	36.988		
자영업	-1480.883 **	507.807	0.712	2.707	4.601	14.782	108.291 ***	17.720		
χ^2	20.38 **		11252.72 ***		26520.02 ***		3403.07 ***			

* p<0.05; ** p<0.01; *** p<0.001

주. (기준집단)인구집단; 경제활동인구; 고용지위: 상용직. 전년 사적이전소득, 시장소득의 경우 연속형 변수

5. 결론 및 함의

이 연구는 공적 사회보장 영역과 대비되는 사적 영역에서 나타나는 역진적 선별성을 경험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한국 복지체제의 역진적 선별성이 단순히 공적 복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윤홍식 2019; 윤홍식·이충권 2022) 사적 영역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나며, 그 특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실증했다. 중요한 분석결과를 개략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사적이전소득에서 해당 소득분위가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가 컸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계층 간에 차이가 더 벌어졌다. 가족 간 소득이전의 경우 소득계층 간 차이가 더 분명했다. 5분위의 가족 간 소득이전 비율이 1분위와 2분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소득하위 계층일수록 공

공부조 등 공적 사회보장제도의 부족분을 가족 간 소득이전으로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사적(민간)보험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인구와 노령인구 모두 중·상층의 비중이 점차 높아졌다. 이는 중·상층이 불충분한 사회보험의 보장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적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산소득(자산기반복지)의 경우 고소득계층의 쏠림 현상이 더욱 극명하게 나타났다. 한편 고용지위에 따라 전체 사적이전소득을 비교해보면 임금노동자(상용직과 임시직 및 일용직)의 경우 사적이전소득에 비중과 규모가 큰 변동 없이 유지되는 반면, 고용주와 자영업자는 사적이전소득에 점점 더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공적 사회보장제도의 취약성을 사적 소득이전(사적 소득보장제도)이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즉,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적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소득계층 간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변화에 중요한 함의를 준다. 예를 들어, 노후소득보장제도를 둘러싸고 사적연금을 강화함으로써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적 사회보장제도가 튼튼히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확대는 노후소득의 불평등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한국 복지체제에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원칙은 먼저 공적 소득보장제도를 강화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해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사적 소득보장제도의 강화는 이러한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강화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의미 있는 결과와 함의를 제시했지만, 이 연구의 한계 또한 분명하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사적 소득이전의 역할을 규명하는 데 있어 사적 자산을 직접적으로 분석하는 대신 그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바탕으로 간접적으로 사적복지의 규모와 양상을 파악했다는 점이다. 실제 사적(민간)보험의 경우 보험에 의한 보장금액이 크더라도 조사 당시 보험급여가 없는 경우 이로 인한 사적 소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부동산의 경우 역시 소유 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임대료가 아닌 이상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측정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로 소득계층과 고용지위별 실제 자산의 상관성을 파악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사적 자산의 성격에 따라서 상이하겠지만, 이 연구는 사회적 위험에 직면해 사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했다. 둘째, 본 연구는 소득이전 중 사적이전소득을 중심으로 살펴봤기 때문에 이에 공적복지가 더해졌을 때 재분배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역진적 선별성을 지적한 선행연구(윤홍식·이충권 2022)를 바탕으로 한국 복지체제의 역진적 선별성을 사적 소득이전이 더 강화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마지막 분석 시점이 2020년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로 인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다만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졌다는 연구결과를 종합하면(Furceri, Loungani, Ostr and Pizzuto 2021; Ferreira 2021), 사적 이전소득의 역진적 선별성이 더 심화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참고문헌 ■

- 김기태(역). (2011). 복지혼합. Powell, M. (ed.) (2007). *Understanding the mixed economy of welfare*. 서울: 나눔의집.
- 김도균. (2022). 자산소유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29(2). 45-80.
- 김동겸, 정인영. (2022). 설계사 소득하락 원인과 평가. KIRI 리포트 (포커스). 552. 1-8.
- 김수성, 차명기. (2016). 연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세연구*. 16(4). 183-207.
- 김연아, 정원오. (2016). 비정규직의 세대 간 전승: 부모세대의 직업적 지위가 자녀세대의 비정규직 여부에 미치는 영향. *비판사회정책*. 50. 334-377.
- 김지훈, 강욱모. (2021). <세대간 연구> 베이비부부세대 및 에코세대간 소득불평등의 재생산: 교육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2(4). 45-64.
- 김진욱. (2013). 한국 복지국가 10년(2000-2010), 복지 혼합 지출구조의 변화와 그 함의.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6. 387-419.
- 김현정 (역). (2021). 이 모든 것은 자산에서 시작되었다. Adkins, L., Cooper, M. & Konings, M. (2020). *The Asset Economy* 서울: 사이.
- 박나리, 김교성. (2021). 청년 불안정성의 궤적과 유형: 20 대 청년의 고용, 소득, 부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8(3). 45-74.
- 박정민, 이기원, 하은솔. (2018). 청년 채무 보유의 관련요인: 부모 사회경제적 특성의 역할. *한국사회복지학*. 70(4). 93-116.
- 박종선, 정세은. (2020). 한국 고령자 가계에 있어서 공적연금이 사적이전소득에 미치는 영향. *사회보장연구*. 36(3). 29-53.
- 손병돈. (2021). 한국의 비공식 복지.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 송상윤. (2021). 코로나 19 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 BOK 이슈노트. 2021년 제9호. 1-17.
- 윤홍식 (2018). 박정희 정권시기 한국 복지체제: 반공개발국가, 복지국가의 기능적 등가물. *한국사회정책*. 25(1). 195-229.
- 윤홍식 (2019).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2.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 윤홍식, 이충권. (2022). 한국 복지국가의 역진적 선별성: 소득계층과 고용지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 38(2). 49-82.
- 이용호, 이원익. (2022). 부채에 따른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궤적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74(3). 339-364.
- 이태열. (2020). 자영업 가구의 소득과 가계 부담에 대한 논의. KIRI 리포트 (포커스). 491. 12-18.
- 최유성, 황남희. (2020). 우리는 생애주기적자를 어떻게 충당하나? - 세대 간 경제 이해: 국민이전계정. KOSTAT 통계플러스. 2020년 가을호. 40-53.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2). 한국복지패널조사. 세종·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 황남희, 이원진, 진화영, 이상협, 안서연. (2021).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공·사적이전의 변화와 대응방안.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Berkhout, E., Galasso, N., Lawson, M., Rivero Morales, P. A., Taneja, A. & Vázquez Pimentel, D. A.

- (2021). *The Inequality Virus: Bringing together a world torn apart by coronavirus through a fair, just and sustainable economy*. Oxfam International.
- Castles, F. (1998). The really big trade-off: Home ownership and the welfare state in the new world and the old. *Acta Politica*. 33(1). 5-19.
- Esping-Andersen, G. (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Ferreira, F. (2021). Inequality in the time of COVID-19. <https://www.imf.org/external/pubs/ft/fandd/2021/06/inequality-and-covid-19-ferreira.htm>.
- Furceri, D., Loungani, P., Ostry, J. & Pizzuto, P. (2021). Will CoVID-19 have long-lasting effects on inequality? Evidence from past pandemics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P/Issues/2021/05/01/Will-COVID-19-Affect-Inequality-Evidence-from-Past-Pandemics-50286>. (2023. 5. 8.)
- OECD. (2019). *Social expenditure update 2019: Public social spending is high in many OECD countries*. Paris: OECD Publishing.
- OECD. (2022). Social expenditure: Aggregated data.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 (2022. 10. 20)
- Sendi, R., Hrast, M. & Kerbler, B. (2021). Asset-based welfare: Is housing equity release a viable option for pensioners in Slovenia.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9(4). 577-589.
- Sherraden, M. & Gilbert, N. (1991). *Assets and the poor: New American welfare policy*. New York: Routledge.
- Taylor-Gooby, P. (ed.). (2004). *New Risks, New Welfa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Abstract

The Regressive Selectivity of the Korean Welfare System: Focusing on Private Income Security Mechanism

Hong Sik Yoon* · Chung Kwon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demonstrate that the regressive selectivity of South Korea's welfare system exists not only in public welfare but also in the private domain and whether such regressive selectivity is becoming more pronounced. To this end, the study analyzed 13 years of Korean Welfare Panel Study data from 2008 to 2020 and found that private income transfers contribute to widening income inequality. Higher income groups receive a larger share and size of private income transfers, leading to increased disparities between income strata over tim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rivate income transfers are observed within families. The study also highlights the growing proportion of the middle and upper classes in private insurance and the concentration of asset-based welfare among high-income groups. Self-employed individuals and employers rely more on private income transfers, while wage workers experience relatively stable levels. Multivariate analysis indicates that higher market income and older age correlate with higher levels of private income transfers. Strengthening the public income security system is essential to ensure basic income for all citizens, regardless of their income level, and effectively address social risks. Any reinforcement of the private income security system should be based on strengthening the public income security system.

Keywords: regressive selectivity, private income, income class, employment status

◆ 2023. 6. 30. 접수 / 2023. 8. 24. 1차수정 / 2023. 8. 13. 게재확정

*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Inha University (hsyoon@inha.ac.kr)

** Visiting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Inha University(ckl1@inha.ac.kr)